



2017 중랑구 복지서비스 안내

이 안내서의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www.jungnang.seoul.kr)
e-Book 자료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CONTENTS

I 복지서비스 사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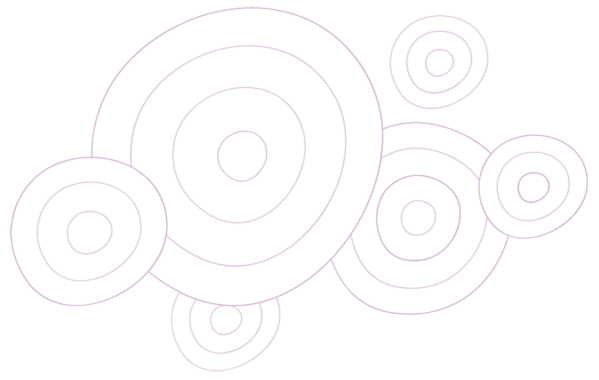
1. 저소득시민 복지서비스	3
2. 노인 복지서비스	43
3. 장애인 복지서비스	53
4. 여성·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85
5.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99
6. 주거 복지서비스	119

II 중랑구 사회복지 유관기관 목록

1. 중랑구 사회복지 유관기관 위치도	142
2. 중랑구 사회복지 유관기관 현황	144
3. 중랑구 사회복지 유관기관 안내	157

III 중랑구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목록

1. 권익보장 및 법률	197
2. 문화 및 여가	203
3. 보육 및 교육	263
4. 보호 및 돌봄요양	287
5.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293
6. 일상생활	317
7. 일자리	341
8.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351
9. 주거	373



1. 복지서비스 사업 목록



1. 저소득시민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8
자활근로사업	1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1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16
생업자금 융자	17
긴급복지 지원	18
희망온돌 위기가정 긴급 지원	20
의료급여제도	21
의료급여 대지급금 · 보상금 · 상한제	22
산정특례 등록	2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4
의료급여 상한 일수 · 연장 승인 · 선택의료급여기관	25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8
가사 · 간병 방문서비스	29
한부모가족	30
행복중랑플러스 통장	31
희망두배 청년통장	32
꿈나래통장	33
희망키움통장 I	34
희망키움통장 II	35
내일키움통장	36
통합문화 · 스포츠강좌 이용권	3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9
차상위계층 범위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수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 **보장 단위:**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의료, 자활급여 특례)를 행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조사

$$\begin{aligned}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 소득} \\ &- \text{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 \text{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 \text{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end{aligned}$$

재산 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 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 재산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미적용: 교육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기준

$(A \times 40\%) + (B \times 100\%)$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적용 $B \times 10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A+B) \times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 \times 40\%) + (B \times 100\%)]$ 와 $[(A+B) \times 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차감·제외 항목 반영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
 -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복지법 4급 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산정특례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및 사회복지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기본 원칙: 최저생활 보장, 보충급여, 자립 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 보편성의 원칙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17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A의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 임차가구: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만 원/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1인	20	17.8	14.7	13.6
2인	23.1	20	15.8	14.7
3인	27.3	24.2	18.9	17.8
4인	31.5	28.3	22	20
5인	32.5	29.4	23.1	21
6인	37.8	34.7	26.2	24.2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주택개량 실시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구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90%	80%

이행기 보전액

- ▶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급여' 로의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을 보장
 -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
- ▶ **지급 대상:** 2015년 6월 현금급여(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된 수급자로서,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2015년 7월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 가입 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수급자 중 희망자
- 서비스 내용: 행복e음을 통한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본인이라도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이 불가하며, 타 용도로 사용(카드결제, 대출금 납입 등) 불가
-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참여 금융기관에서 발급 신청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서비스 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 내용: 1인당 월 10kg
 - 2016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정부양곡 판매 가격의 50~90% 지원(20kg 1포대 14,110~25,310원)
- 지원 내용: 매월 초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 공급희망지(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교육급여 > 교육청에서 지급

지원 내용	초	중	고	비 고
입학금·수업료	X	X	O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	X	X	O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부교재비	O	O	O	1인 41,200원(연 1회)
학용품비	X	O	O	1인 54,100원(27,050원/연 2회)

해산급여

- >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1인 60만 원
-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만 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자활급여

- 자활근로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의료급여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 2종: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 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 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 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 할인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스코(1544-3131)

》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 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 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 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 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번호 안내	114 안내 요금 면제	114 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영구)임대주택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4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 **차상위계층 등**: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전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 마련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기 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1~1704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한 의료 지원

서비스 대상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

구 분	가구원 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 중위소득의 50%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 **기본 재산액**

(단위: 만 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13,500	8,500	7,250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구 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회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 ·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5%(중증), 10%(회귀)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50% ·	요양급여 비용의 20%



구 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일반 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 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30~60%	요양급여 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의 50%	요양급여 비용의 3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수술 시 30일) 기본 식대의 20%

▶ **보험료 지원:**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 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대상

» 기본 원칙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기존 보호제도 우선 연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책정대상자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원 등에 대해 연계지원 실시
-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부 처	사 업 명	부 처	사 업 명
보건복지부	· 차상위 양육 지원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 푸드뱅크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 요금 할인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화재청	궁릉 무료입장
교육부	· 대입 기회균형 선발 · 국가장학금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등 전용 디지털 TV 구매 알선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6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재(무)등급, 0등급 포함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로서 창업예정자 및 6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무등록사업자 포함)

▶ 제외 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제조업(5인 미만), 금융·보험업, 사치 성향 업종
-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 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 진행으로 확인되는 자

▶ 예 산: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 지원 내용

상 품 명	대출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대출 기간
창업자금	자영업을 창업(또는 예정)하고자 하는 저신용·저소득자	7천만 원	연 4.5%(무등록자 연2%)	최대 5년
운영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2천만 원	연 4.5%(무등록자 연2%)	최대 5년
시설개선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2천만 원	연 4.5%	최대 5년
긴급생계자금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이용자 중 1년 이상된 성실상환자	5백만 원	연 4.5%	최대 4년

이용 방법 및 문의

- ▶ 우리미소금융: ☎ 3421-4963(중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 ▶ 신한미소금융: ☎ 070-7547-8971~3(신한은행 망우지점 3층)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www.kinfra.or.kr)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생계비

(금액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100	1,585,100

- 의료비: 1회 3백만 원까지(동일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실손보험가입자 원칙적 제외)



■ 주거비

(금액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2인	3~4인	5~6인
지원액	382,800	635,900	838,9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금액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529,8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 교육 지원

(단위: 원)

구 분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219,100	348,700	·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단위: 원/회)

지원 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액	94,9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민간기관 연계 지원

▶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소득·재산·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기준

-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그 밖의 지원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 재산 기준

(단위: 만 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원액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문 의: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73~4

희망온돌 위기가정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기에 단기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위기 해소

서비스 대상

- » **대 상:**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서비스 내용

» 지역 위기 긴급 기금 지원

지 원 항 목	지 원 액	지 원 횟 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최대 월 30만 원	최대 연 3회

» 광역 위기 긴급 기금 지원

지 원 항 목	대 상	지 원 액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최대 500만 원
주거비	임차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복구비 등	
기타 긴급 지원	재해·재난으로 인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복구비 등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5개 거점기관에 신청

거 점 기 관	연 락 처	지 원 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중화1동, 상봉1동, 상봉2동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면목본동, 묵1동, 신내2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망우본동, 망우3동, 면목2동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0	중화2동, 묵2동, 신내1동, 중증장애인 세대

» 문 의: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33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대상

- ▶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선정 기준**
- 1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화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결핵 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② 행려환자
 - ③ 타 법 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액

구 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PET 등: 암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 등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의료급여 대지급금 · 보상금 ·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액을 대지급해 주거나 본인 부담금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기회 확대

서비스 대상

≫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 대지급금 지원

- 대지급 기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대지급 상환: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

≫ 본인 부담 보상금제도

- 1 종: 매 30일간 본인 부담액이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 2 종: 매 30일간 본인 부담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 부담 상한제

- 1 종: 매 30일간 본인 부담액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 2 종: 매 6개월간 본인 부담액이 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근거 법령 및 문의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산정특례 등록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어 의료보장성 강화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 ※ 다만, 심장·뇌혈관질환, 중증외상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 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결핵질환자

서비스 대상

》 지원 내용

-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적용 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환자: 등록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년 6개월)
- 뇌혈관·심장질환자: 수술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
- 적용 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로 소급(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 신청: 신청일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보장기관(구)생활보장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보장기관(구)생활보장팀에서 등록
-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 면제자(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 환자, 가정 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급여 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 금액:** 1인 매월 6천 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 원 전액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 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 원 지급

근거 법령 및 문의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의료급여 상한 일수 · 연장 승인 ·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 일수(365일)를 초과할 경우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 승인 일수를 초과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그 병 · 의원을 이용하는 제도

의료급여 상한 일수

- ▶ **의료급여 일수:**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함
-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 또는 등록 중증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 연장 승인

- ▶ **신청일수**
 - 만성 고 시질환: 90일(1회)
 - 그 외 기타 질환: 90일(1회) + 90일(1회)
 - 등록 결핵,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 질환: 연장 승인 제외됨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 **적용 대상**
 - 등록 희귀난치성 또는 등록 중증 질환 및 만성 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 일수 4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 일수 545일([상한 일수 365일+90일(1차)+90일(2차) 연장 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지원 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6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포함)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암 발견자
 - 5대 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 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 2017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90,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소아암 환자: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서비스 내용

» 지원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연간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까지 지급
(실제 지원 금액 100만 원 정도임)
-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일부 본인 부담금 연간 200만 원까지 지급
- 소아암 환자: 연간 2,000만 원(백혈병 3,000만 원)까지 지급

» 지원 기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소아암 환자: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 환자: 보건소 등록 및 지원 신청
- 소아암 환자: 보건소 신청 → 소득·재산 조사(복지정책과) → 선정

➤ 근거 법령: 암 관리법

➤ 문 의: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 내용: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 부담금
- 지원 금액: 1, 2종 구분없이 50만 원, 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6

심장병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심장병, 얼굴기형, 콩팥이식, 골수이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 서비스 내용: 수술 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재입원비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 문 의: 한국심장재단 ☎ 02-414-5321~3

실명 예방 사업

- 지원 대상: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과 수술비
- 서비스 내용: 안과 사전 검사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1088

정신보건 및 알코올상담 센터

- 정신보건센터: 구청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counselling.or.kr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www.onmaum.com
- 알코올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www.g-health.kr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희귀질환 133종 해당자 및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기준: 2017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 미만

■ 재산 기준: 2017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 미만

2017년도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

구 분	가 구 기 준	소 득 기 준	재 산 기 준
일 반	환자 가구	120%	300%
	부양의무자 가구	200%	500%
혈우병, 고췌병 파브리병, 류코다당증	환자 가구	160%	1,000%
	부양의무자 가구	240%	1,200%

※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월 5,360,856원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월 7,147,808원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본인 부담금), 간병비(월 30만 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 해당 질환에 한함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보건소 등록 → 소득재산 조사(복지정책과) → 대상자 선정

▶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 **문 의:** 중랑구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2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자
- ▶ **제외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 시간과 본인 부담금

제공 시간	소득 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44,800원	월 244,8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26,400원	월 18,4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75,400원	월 265,360원	월 10,40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54,700원	월 20,700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3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으로 지원 연령 연장
- 선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 한부모가족 60% 이하)

서비스 내용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자녀(월 12만 원)
- 학용품비: 중 · 고등학생 자녀(연 54,100원)
- 교통비: 중 · 고등학생 자녀(분기 86,400원) ← 서울시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월 5만 원)

》 청소년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월 17만 원(기초 수급권자 가구 제외)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실비(입학금 및 수업료) ⇒ 기초 수급권자 가구 제외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기초수급자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7



행복증랑플러스 통장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이 창업자금, 임대보증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의지를 높이고 촘촘한 사회복지를 구현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중랑구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3% 초과, 80% 이하 가구
-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소득 미적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단, 교육급여 대상자 신청 가능)
- 가구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가구
-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제외 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재(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청년두배,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 가구(졸업 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
- 차량 2,000cc 이상 소유자(단, 생업용 차량은 인정)
-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저축 기간: 36개월(3년) ■ 모집 가구: 96가구(한 해 32가구씩 3년/동별 2명)
- 저축 목적: 주거비용, 교육비용, 창업·운영자금
- 적립내용

적립금액(단위: 만 원)		총 적립금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월 10/ 총 360	월 10/ 총 360	720만 원+이자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 기간: 2017년 5월 중
- ▶ 문 의: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32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포 세대'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빈곤층 전락을 방지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 ~ 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 (세금공제 전) 월 2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기준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면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면제자

▶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만기 가구·중도해지 가구 포함) 및 보건복지부 사업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가구 (* '디딤돌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 가입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저축 기간/금액: 2년·3년 중 선택 / 5만 원·10만 원·15만 원 중 선택
- 저축 목적: 주거, 결혼, 교육, 소규모 창업·운영
- 모집 가구: 서울시 전체 1,000가구(중랑구 총 49가구)
- 적립 내용(1:1 매칭 지원)

적립금액(단위: 만 원)		총 적립금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월 5, 10, 15	월 5, 10, 15(본인적립금액의 100%)	1천80만 원+이자(3년, 월 15만 원 적립 시)	이자율-2년(2.7%), 3년(2.8%)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본인 신청 원칙, 동일 가구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 ▶ 신청 기간: 2017. 3. 31.(금) ~ 4. 25.(화) 연 1회 모집
- ▶ 문 의: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02-2094-1629) 및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꿈나래통장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탈빈곤 토대 마련 및 자활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사업공고일 기준)
꿈나래통장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③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꿈나래통장

- 지원 내용: 참가자는 5만 · 7만 · 10만 · 12만 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 비율 지원(이자 별도)
- 저축 목적: 자녀교육자금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4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이행·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시설수급가구(소득 요건 충족 시)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 참여 불가
 -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서비스 내용

- »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및 민간 매칭금 지원(단, 민간 매칭금은 2013년까지 가입한 가구에 한함)
- » 지원 개요: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적금상품)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중위소득 기준) → 3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과 함께 전액 지급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4



희망키움통장 II

근로 빈곤층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 진입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 가구 범위: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 가구 기준 준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 I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 참여 불가
 -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I) 가입 가능
 -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 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

서비스 내용

- ▶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저축 및 소득하한을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 지원 개요: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적금상품)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전액 지급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4

내일키움통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희망키움통장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원은 가입 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 참여 불가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특별중도해지, 만기 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함)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3년 간 개인 저축에 대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지원 개요: → 매월 본인 저축(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적금상품 중 선택)

- 매월 내일근로장려금(지자체) 적립
- 매월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저축액에 대해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매칭
- 3년 내 취·창업(탈수급 포함) 시 내일키움수익금 일괄정산·지급 및 적립금 전액 지급(※ 내일키움수익금은 매출액에서 매출적립금 제외한 수익이 남을 경우에만 적립하며,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일부사회서비스형) 참여 시 3년간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이 경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자활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3



통합문화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배려계층에게 다양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문화복지사회를 구현

서비스 대상

- ▶ 통합문화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예술 · 국내여행 ·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 스포츠강좌 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사회복지시설거주자 포함), 법정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개인별 카드 발급(연간 6만 원)		
	이용 기간	발급일 ~ 2017. 12. 31.		
	신청 절차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 2시간 이후 사용 기간: 2017. 2. 17.(목) ~ 11. 30.(목)	
		온라인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 회원 가입 후 신청 → 자격 확인 → 카드 발급 및 수령(농협 영업점 또는 자택 배송) → 카드 수령 등록 후 사용 ※ 본인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기간: 2017. 3. 1.(수) ~ 11. 30.(목)	
사용 방법	공연·영화·스포츠 관람 및 여행상품 등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 누리카드로 결제			
	참여 대상	• 거동이 불편해 자발적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홀몸어르신, 초고령자 등 •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산간 벽지 거주 자, 복지시설 거주자 등		
	내 용	지역 및 대상을 고려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		
	참여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의 ‘기획사업 안내’ 메뉴 이용 또는 각 지역 주관처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내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자 없을 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포함)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월 최대 8만 원 지원 (이용권카드 지급)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직접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 신청(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통합문화 이용권: 02-2094-1835 / 스포츠강좌 이용권: 02-2094-185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증가시마다 6인 가구 기준과 5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 재산 기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단, 한부모가족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시 제외함

-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재산 기준	5억 원					

※ 산출식: {(2인 대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185%} + 2인 대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지원 내용

▶ **급여 지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 원), 해산급여(60만 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 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소득대비 차등 급여

■ 최대 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 지원액: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 급여액 = 가구 규모(가구원 수)별 최대 급여액 - (0.25 ×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 7인 이상 가구의 최대 지원액: 1인 증가 시마다 6인 가구 최대 지원액과 5인 가구 최대 지원액의 차이를 6인 가구 최대 지원액에 더하여 산정



차상위계층 범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구 분	특 성	비 고
한부모가족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130%
차상위 장애인	등록장애인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 차상위 자격 미취득자	

2. 노인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44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4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6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47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48
어르신일자리 취업 알선	49
65세 이상 부분·완전틀니, 임플란트 지원	50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51
치매치료비 지원	52



기 초 연 금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선정 기준액**

(단위: 천 원)

구 분	1인 가구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1,190	1,904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분 -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60만 원×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 (일반재산합계 - 기본 재산액(1억 3천5백만 원)×재산소득환산율(4%)×12개월

㉡ = (금융재산합계 - 2,000만 원)×재산소득환산율(4%)×12개월

기초연금 지급액

1인 가구	최고 206,050원 ~ 20,000원
부부 가구(1인당)	최고 164,840원 ~ 20,000원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급, 부부 수급일 경우 20% 공제 후 지급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 **문 의:**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65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경로식당

-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 **이용 방법:** 경로식당 운영기관에 이용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후 이용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급식일자
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겸재로 9길 45(면목동)	6회(월~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용마산로 228(면목동)	6회(월~토)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신내로 115(신내동)	6회(월~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봉화산로 153(상봉동)	6회(월~토)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신내로 56(신내동)	5회(월~금)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신내로 15길 175(신내동)	6회(월~토)
구립중화경로복지관	02-436-1390	동일로 138길 28(중화동)	5회(월~금)
나눔의 집	02-434-9345	용마공원로 5가길 69-6(망우동)	5회(월~금)
중화동교회	02-435-0046	동일로 139길 10(중화동)	5회(월, 화, 목, 금, 토)
사랑의 집	02-495-2517	송림길 91(망우동)	5회(월~금)
동서울중앙교회	02-494-7713	면목로 29길 37(면목동)	6회(월~토)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밀반찬 배달

-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어르신
- ▶ **이용 방법:** 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 관 명	연 락 처	담 당 동
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밀반찬만 배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7동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신내2동, 면목본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상봉1동, 중화1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중화2동, 묵1동, 묵2동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02-976-2808	묵1동, 묵2동(밀반찬만 배달)

- ▶ **문 의:** 중앙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8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활동기반을 조성함

서비스 대상

➤ 연 령: 만 65세 이상 노인

➤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

① 장기요양등급 외 A, B자로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60%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사회활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변·활동 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금

서비스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110% 미만	11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60% 이하
27시간(9일)	A-가형 무료	A-나형 18,000원	A-다형 37,000원	A-라형 42,000원	A-마형 48,000원
36시간(12일)	B-가형 8,280원	B-나형 24,000원	B-다형 49,000원	B-라형 56,000원	B-마형 64,000원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83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 **신청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자
- ▶ **급여 대상:**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1, 2,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 ▶ **급여 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복지용품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 **서비스 부담금**
 - 시설급여 수혜자는 20% 본인 부담, 재가급여 수혜자는 15% 본인 부담
 - ※ 본인 부담금 이외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신청 방법 및 문의

- ▶ **등급판정 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 →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 **문 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중랑구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전문 요양원

• 서울시립중랑노인요양원 ☎ 02-437-0144 • 서울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 02-490-2600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어르신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 3~4등급자 또는 중증 질환자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 서울재가관리사 2명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내용

- 개인활동 서비스: 목욕, 용변 수발,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부축 동행, 이발 등
- 가사 지원 서비스: 식사 시중, 시장 보기, 주변 정돈, 생필품 구매 등
- 사회적 서비스: 행정관청 업무대행, 취미, 사회활동 조장 등
- 서울재가관리사와 유사 서비스(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서울재가간병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서비스 대체 가능한 대상자는 서비스 전환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외(A,B) 해당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미만 장애인 1~2등급자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서비스 제공일: 주 1~3일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84



어르신일자리 취업 알선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 연초 중량구청, 사업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사업단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선발 실시함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 행 기 관	연 락 처
중량구청	02-2094-1562
시립중량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대한노인회 중량구지회	02-432-6080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 대상자: 중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선발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선발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대주 형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문 의: 중량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62

취업 알선 기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www.k60.c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www.100senuri.go.kr)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중량구 관할 북부고용센터 ☎ 02-2171-1700)
-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65세 이상 부분 · 완전틀니,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 · 완전 무치아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여
식생활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

서비스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 관리
임플란트 평생 2개

›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률	20%	30%	50%
대 상	의료급여 1종,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2종, 차상위(만성질환자)	건강보험 (지역, 직장)

신청 절차

› 병원 진료 후 등록신청서 발급 → 대상자 사전 등록(의료급여: 구청, 건강보험: 치과병원) →
등록 후 서비스 이용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8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 패턴을 향상시키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천 원	69,940	61,308	70,433
2인	3,873천 원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천 원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천 원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천 원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천 원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천 원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천 원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천 원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천 원	414,481	398,811	480,394

서비스 내용

▶ 건강 상담: 분기 1회(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및 전문가 상담)

▶ 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수중 운동 주 3회(1회 90분, 월 12회 이상)

▶ 내용: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 강화, 관절 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구 분	서비스 가격	제공 기간
수중 운동	월 10만 원(정부 9만 원, 본인 1만 원)	12개월

▶ 문 의: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 02-2094-1582

치매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만, 60세 이하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지원

서비스 내용

- ›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 제외한 본인 부담금
- › 지원 금액: 1인당 3만 원/월(연 36만 원 상한)
- › 지급 방법: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 ›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천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직 장	61,029	104,130	143,052	165,762	197,177	226,065	258,317
지 역	43,944	113,972	161,510	185,403	218,155	247,971	278,115

※ 3인 가구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기준이 적용된 금액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 치매처방전 사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 시 진료비 영수증
 - 치매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필요시)
-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 › 문 의: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 02-435-7540, 중랑구청 건강증진과 ☎ 02-2094-0853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54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57
장애수당	58
장애인 연금	59
장애아동 수당	6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1
발달재활 서비스	63
장애인 의료비 지원	64
장애인 보장구 지원	6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66
장애인 활동 지원	67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68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69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70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7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2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3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74
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	75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종이 있음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	읍·면·동	→	의료기관	→	읍·면·동	→	연금공단	→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 의뢰		장애진단서 발급		심사 요청		심사 및 결과 통보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14.11.14)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호대상자도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함

▶ 장애등급 심사 요청

- 심사 처리 기간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공단 접수일로부터 약 21일 소요
- 신청인의 보장 구분, 신청 유형, 심사 사유 등을 진단 내용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 내용에 대해 확인한 다음 전산 송신으로 심사 의뢰

▶ 자료 보완 및 직접 진단

- 신청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진료기록 직접 확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 자료 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 요청 반려 가능
- 장애심사 결과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직접 진단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장애인 등록일: 장애등급 결정일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 두 개 이상의 중복 장애를 심사 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 통보
- 한 가지 장애를 심사 요청했으나 사실상 중복 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하여 심사하면 각각 심사 결과를 통지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 등록증 회수, 재발급하고,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함

» 심사 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
-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 합산 결정 내용은 반드시 심사 결과 외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별도 진행 가능)
- 기존 장애인이 재판정 심사 결과 등급 외, 확인 불가, 심사 반류를 통지받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하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2013.1.27. 시행)

구 분	정 의	확 인 자 료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 장애인등록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 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

》 자격 확인 주의사항

-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근거 법령 및 문의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0조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의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서비스 재판정(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 동수당 신청) 또는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 원
- 기타 장애: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검사 소요비용이 5만 원 이상 초과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검사 소요비용이 10만 원 이상 초과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행정청 직권 재진단: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는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수급자 직접 청구, 의료기관 청구
-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원/ 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 중위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7,773,241원)

서비스 내용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 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1,190,000	1,904,000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월 20,000원~206,050원 차등 지급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최고 329,680원 지급

▶ 부가급여: 월 20,000원~286,050원 차등 지급

(단위: 월/ 원)

구 분	기 준	기 초 급 여	부 가 급 여	지자체급여
기 초	18~64세	206,050	80,000	30,000
	65세 이상(재가)	0	286,050	30,000
	65세 이상(시설특례)	0	70,000	30,000
	65세 이상(시설신규)	0	0	30,000
차상위	18~64세	20,000 ~ 206,050	70,000	30,000
	65세 이상(특례)	0	140,000	30,000
	65세 이상(신규)	0	70,000	30,000
차상위 초 과	18~64세	20,000 ~ 206,050	20,000	0
	65세 이상	0	40,000	0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아동 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포함

▶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 중위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7,773,241원)

서비스 내용

▶ 지급 금액

구 분			월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20만 원
		기초(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15만 원
		시설수급자	7만 원
	경증장애인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10만 원
		기초(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원
		시설수급자	2만 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원 수	2017년 대상자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가구별 월소득	826,465 원 초과	1,407,224 원 초과	1,820,457 원 초과	2,233,690 원 초과	2,646,922 원 초과	3,060,155 원 초과	3,473,388 원 초과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 씩 증가
인정액 기준	1,652,931 원 이하	2,814,449 원 이하	3,640,915 원 이하	4,467,380 원 이하	5,273,845 원 이하	6,120,311 원 이하	6,946,776 원 이하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 자격 불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미소금융대여사업 이용(☎ 1600-3500)**

서비스 내용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 기간
• 무보증 대출: 1가구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보증 대출: 1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함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발달재활 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장애 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

서비스 대상

- ▶ 연 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 장애 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에 준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진단서 양식사용 의무화, 6월까지의 의사의 진단서와 병행)
- ▶ 소득 수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단위: 월/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2,470,000	4,746,000	6,763,000	7,741,000

서비스 내용

- ▶ 언어 · 청능치료, 미술 · 음악치료, 행동 · 놀이 · 심리치료
- ▶ 서비스 이용 가격

(단위: 원)

구 분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본인 부담액	면제	20,000	40,000	60,000	80,000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

서비스 내용

구 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
외 래	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2차 의료 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만성질환자 외	특수장비 촬영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 원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 부담 식대		없음
약 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 조제	500원	없음
			직접 조제	900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장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를 증진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 대상 품목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90%, 기준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 지원
 -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의료급여 수급권자)**
 -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병원) → ② 보장구 신청(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
 - ③ 적격 여부 판단(구청) → ④ 보장구 구입 → ⑤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병원) →
 - ⑥ 보장구 급여비 청구(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 ⑦ 보장구 급여비 지급(구청)
 - ※ 건강보험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02-2204-8185,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 **장애종별:**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기 · 발달 · 언어 장애인
- ▶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교부 우선순위**
 -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② 기초수급자 ③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1가구
 - ④ 재가장애인 ⑤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장애종별	교 부 품 목
지체 · 뇌병변	보행차(좌석형, 탁자형)/목욕의자/휴대용 경사로/독립형 변기 팔 및 등 지지대/장애인용 의복
지체 · 뇌병변(1~3급)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접시 및 그릇/음식 보호대/기립 훈련기/이동변기/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환경조정장치/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 · 심장(1~3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1~3급)	외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심장 · 호흡기	장애인용 의복
심장 · 호흡기(1~3급)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 · 발달 · 언어	대화용 장치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음성시계/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대화용 장치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킴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서비스 내용

▶ 활동 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매월 이용 가능한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 급여

활동 지원 등급	기본 급여액(시간)
1등급	1,091,000원(약 118시간)
2등급	869,000원(약 94시간)
3등급	657,000원(약 71시간)
4등급	435,000원(약 48시간)

■ 추가 급여

활동 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 급여액(시간)
최중증 1인 가구 · 최중증 취약 가구	2,523,000원(273시간)
중증 1인 가구 · 중증 취약 가구	740,000원(80시간)
기타 1인 가구 · 기타 취약 가구	185,000원(20시간)
출산 가구	740,000원(80시간)
자립 준비	185,000원(20시간)
학교생활	93,000원(10시간)
직장생활	370,000원(4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85,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 · 학교생활	675,000원(72시간)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신청(연중 수시)

▶ 근거 법령: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보행상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보조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활동의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

사업 내용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 및 안내 보조

- 이용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신장 1~2급, 시각 1~3급 등록장애인
- 이용 방법: 전화 신청(☎ 02-2092-0000)
- 이용 요금: 5km까지 2,000원 / 5km 초과 시 500m당 100원

»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 이용 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이용 요금: 무료
- 이용 방법: 중랑구 홈페이지(www.jungnang.seoul.kr) 확인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 이용 대상: 지체 및 뇌병변 1·2급 중증장애인, 기타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이용 방법: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 및 전화 신청(☎ 1588-4388)

문의

- » 문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

서비스 대상

▶ 대 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서비스 내용

▶ 카드의 종류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
- 장애인 단순무임카드
- 중증장애인용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에 거주하는 1~3등급의 장애인
 - 어린이(만 6~12세), 청소년(만 13~18세), 일반(만 19세 이상)
 - ※ 지하철 단말기를 두 번 태그하여 장애인과 보호자 통과 가능

▶ 서비스 내용: 서울 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 그 외 지역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충전 후 사용 가능

분실 신고 및 신청 방법

▶ 분실 신고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카드: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상담센터에 신청
(신한카드 ☎ 1544-7000, 신한은행 ☎ 1544-8000)
- 단순무임카드: 최초 발급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재발급 시 수수료 3,000원 납부 및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14,000	3,940,000	5,097,000	6,254,000	7,411,000	8,568,000

▶ **장애(질병) 및 연령 기준**

-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만 60세 이상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 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연령 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 무관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시간:** 1회 1시간

▶ **서비스 내용:**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및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이용 기간 및 가격:** 10개월 지원

- 월 4회 제공: 월 160,000원(정부 지원금 144,000원, 본인 부담금 16,000원)

▶ **주의사항:**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대상자에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향후 사업연도에 재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1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함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 시점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자녀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 시점에 월세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 무료 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 요건 적용)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 거주 요건 제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장애등급, 월세 거주 요건 제외)

▶ 지원 내용

- 보증금: 2인 이하(1세대 95백만 원), 3인 이상(1세대 100백만 원)
- 입주 기간: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 ▶ 신청 대상: 장애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선정 내용: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

서비스 대상

» 신청 대상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비스 대상

» 신청 대상

- 1)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일반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수리 대상 보장구: A/S 기간이 경과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리비의 15만 원까지 지원(연간)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의 8만 원까지 지원(연간)
- ※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보장구 수리 전 동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수리신청서 작성 후 수리의뢰서 발급
- 의뢰서 수령(등기 혹은 직접) 후 중랑구 지정 수리업체에 보장구 수리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0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생활관리를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기준:**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 진단서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40%	2,314,000	3,940,000	5,097,000	6,254,000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 수준과 욕구에 따라 초기 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이용

- **지원 절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 **이용 방법:** 선정된 후 다음 달부터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관내 지역	영지원, 공감과 소통	
서울시 타 지역	성심복지센터(동대문구) 마음사랑센터(노원구) 공감사회서비스지원단(마포구) 하이사회서비스사업단(동대문구)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관악구)	무지개마을(마포구) 행복서비스(도봉구) (사)한국정신장애인복지협회(중구) (사)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관악구)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건강증진과 ☎ 02-2094-0853



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 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족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 :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 원~22만 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 복지 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만 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 1인 15만 원, 2인 : 30만 원, 3인 이상 : 40만 원	공공후견법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만 원 바우처 지원(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 가능, 다만 돌보미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	-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지원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27,000원 - 돌보미(여행도우미) 및 캠프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1) 무료 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 이용 대상자 -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자막 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 시각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내 용</th><th>근로 시간</th><th>급여</th></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복지일자리</td><td>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td><td>월 56시간</td><td>월 보수 363,000원/ 월 15,000원</td></tr> <tr> <td>일반형 (전일제) 일자리</td><td>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td><td>주5일 40시간</td><td>월 보수 1,353,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135,000원</td></tr> <tr> <td>일반형 (시간제) 일자리</td><td>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td><td>주 20시간</td><td>월 보수 676,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68,000원</td></tr> <tr> <td>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td><td>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td><td>주5일 25시간</td><td>월 보수 1,066,000원/ 월 운영비 113,000원</td></tr> <tr> <td>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td><td>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td><td>주5일 25시간</td><td>월 보수 844,000원/ 월 운영비 110,000원</td></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	월 56시간	월 보수 363,000원/ 월 15,000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353,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135,000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	주 20시간	월 보수 676,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68,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66,000원/ 월 운영비 113,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	주5일 25시간	월 보수 844,000원/ 월 운영비 110,000원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 모집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	월 56시간	월 보수 363,000원/ 월 15,000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353,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135,000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	주 20시간	월 보수 676,000원/ 월 사업주 보험료 68,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66,000원/ 월 운영비 113,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	주5일 25시간	월 보수 844,000원/ 월 운영비 110,000원																								



공공요금 관련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 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 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가는 요금 : 월 1만 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 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공공요금 관련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 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 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 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사전 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공공요금 관련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 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2014. 12.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 본부
전기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 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 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 요금, 통신 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세제해택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 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세제혜택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의 및 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 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에 상속 개 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 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500만 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 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상속인 장애인이 생존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여성 ·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6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87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88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90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9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92
여성 긴급전화 서울 1366	9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94
여성안심귀가서비스	95
여성안심택배서비스	96
여성안심지킴이집	9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함

서비스 대상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여야 함(비뇨기와 의사의 '난임진단서'는 불가)
-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 소득 기준 차등 지원(소득 판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 기준)

서비스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체외수정시술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5회까지 지원 • 신선배아(3회): 1회 100만 ~ 300만 원 차등 지원 • 동결배아(3회): 1회 30만 ~ 100만 원 차등 지원
인공수정시술	1회 20만 ~ 50만 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이용 방법(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1차 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정부 지원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서 1부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 신청 가능
-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0169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 120만 원 범위 내 사용 가능한 카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신청 안내)

서비스 대상

- **신청 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서비스 내용

- **지원 범위:**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1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 **이용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임신헌인서 및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
(우편 접수처: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담당 부서)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본인,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담당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이름은 반드시 임신부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함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0169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산모에게 임신 · 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자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맘편한카드)도 신청 가능(87쪽 참고)

서비스 내용

- ▶ 임신 동안 받는 임신 · 출산에 관련 진료비용 중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 ※ 다태아 임신부는 20만 원 추가 지원
- ▶ 지정요양기관 중 한의원 · 한방병원의 경우, 임신 · 출산 관련 상병에 한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한약, 첩약 등)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 ※ 1일 6만 원의 사용한도 폐지(2013. 3. ~)
- ▶ 전자 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건강보험 가입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계좌로 지급
- ▶ 카드 수령 후부터(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미사용 지원금 자동 소멸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관련 서류 제출
- ▶ 문 의
 - 건강보험 가입자: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 의료급여 수급자: 중랑구 사회복지과 ☎ 02-2094-169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
 - 일반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 중(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18세 이하 또는 미혼모 시설 입소 중인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특례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 중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또는 중증장애산모
-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만 4개월 경과 후 유산·사산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의사소견서 첨부)

서비스 내용

- ▶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이용권 지급
- ▶ **지원 기간:** 최단 5일~최장 25일(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 차등화)
- ▶ **이용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1주 5일)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 ※ 대리인 신청 시 산모와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 **제출 서류:**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산모수첩(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쌍둥이: 의사소견서 첨부
-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016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

사업 대상

- ▶ **지원 대상:**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
- ▶ **거주 기준:**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 지역 내 거주
- ▶ **소득 수준:** 가구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 ▶ **영양 위험요인:**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중 1가지 이상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사업 내용

구 분	서 비 스 내 용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 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
보충식품 공 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가정 배달 방식 전달이 원칙)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식품 형태로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영양평가	- 약 6개월에 1회 실시(대상자 선정 시, 자격 재평가, 중간평가, 사업 종료 시) - 빈혈 검사, 신장 · 체중 측정, 식품 섭취 현황 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하여 대기자 신청
- ▶ **구비서류:**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수첩
- ▶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제11조
-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47~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서비스 대상

- ▶ **기저귀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미만) 가구
-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한부모(부자, 조손)가족인 경우

서비스 내용

-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온라인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 **지원 금액**

구 분	지 원 내 용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6만 4,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만 6,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이용 방법(제출 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육아 휴직 시 직장에서 휴직 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휴직증명서)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0169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함

서비스 대상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 **질환 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
-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지원 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1)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서비스 내용

- ▶ 3대 고위험 임신부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 ▶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로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 부담금 적용,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 **이용 방법(제출 서류)**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 신청 가능
-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 **문 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0169



여성 긴급전화 서울 1366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

서비스 내용

» 상담 안내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10명의 상담원이 1일 3교대 상담
- 12개 기관 전용회선 구축 및 긴급 피난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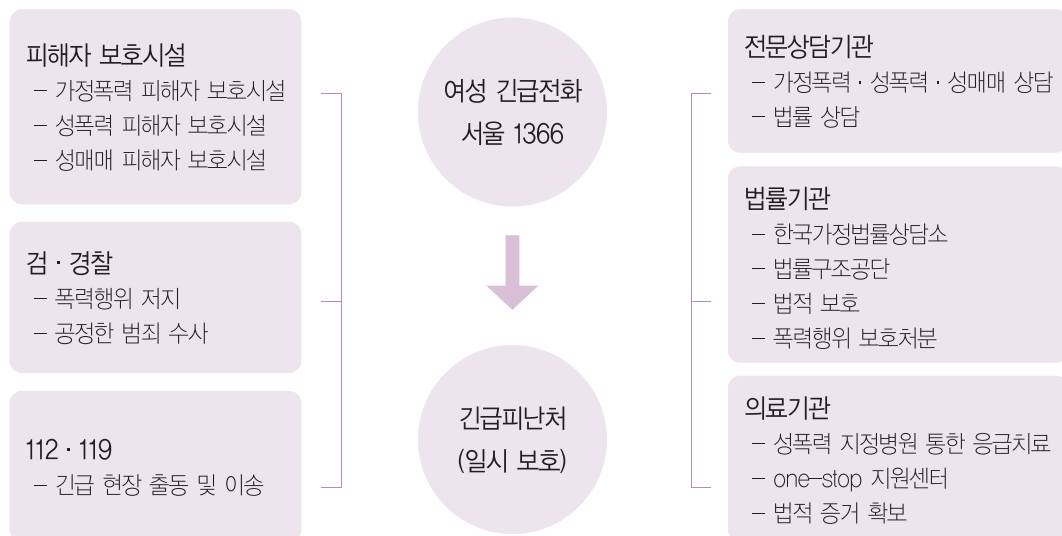
» 상담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폭력 관련 상담
- 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 보호시설 연계, 전문상담기관 안내, 직접 상담, 정보 제공 등

» 상담 방법: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

- 전화 상담: 10시~17시까지 전문상담기관 연계, 그 외 시간 1366 상담원 직접 상담
- 사이버 상담: 공개 · 비공개 상담 내용을 1366 홈페이지(www.seoul1366.or.kr) 상담실 혹은 이메일(seoul1366@hanmail.net)로 답변을 통해 상담

» 상담 처리 및 절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함

서비스 내용

» 방문교육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활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 성장,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건강 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녀 생활 서비스	- 인지 영역: 독서코칭, 숙제 지도, 발표 토론 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 강화 영역: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 교육 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 지도

» **통·번역서비스 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평가: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 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 상담 및 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근거 법령 및 문의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문 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1577-1366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435-4149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서비스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비스 내용

- ▶ **이용 대상:** 여성 및 청소년
- ▶ **운영 장소:** 중랑구 11개 지하철역(사가정역, 용마산역, 면목역, 상봉역, 망우역, 중화역, 중랑역, 먹골역, 양원역, 봉화산역, 신내역)
- ▶ **운영 시간:** 월~금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단, 월요일은 밤 10~12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 ▶ **신청 방법:** 중랑구청 상황실(☎ 2094-1148, ☎ 120으로 전화 신청 또는 '서울시 여성안심스카우트' 앱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2094-1766 또는 ☎ 120

이용 방법

- ▶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 구청상황실(☎ 2094-1148, ☎ 120으로 전화 또는 '서울시 여성안심스카우트' 앱 신청)
- ▶ 스카우트는 신청인 도착 10분 전까지 만남장소(지하철역) 앞에서 대기
- ▶ 약속 장소에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남
- ▶ 신분증 확인 후 귀가 지원(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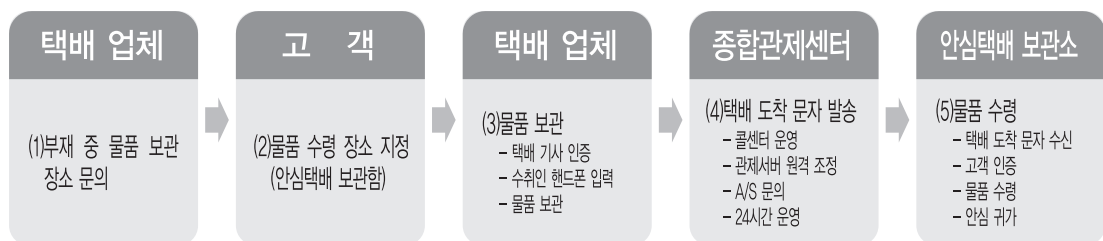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 ▶ **운영 장소:** 면목본동주민센터, 면목5동주민센터, 면목3·8동주민센터, 망우 행복키움 생활지원센터, 면목4동주민센터
- ▶ **이용 요금:**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 요금 부과)
- ▶ **신청 방법:** 택배 신청 시 '받을 사람' 주소지에 가까운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를 기재하거나 주소지에 부재 시 물품 수령 장소를 택배보관함으로 지정
- ▶ **문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2094-1766 / 시스템 문의 ☎ 1899-4711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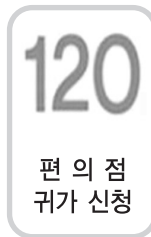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긴급 대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함

서비스 내용

- ▶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 ▶ 운영 장소: 중랑구 26개소 편의점(서울시 전체 642개소)
- ▶ 운영 내용: 위기 상황 시 긴급 대피, 경찰 신고, 안심귀가 지원
- ▶ 이용 방법: 편의점 우측 상단 '여성안심지킴이집' 마크 확인 후 대피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2094-1766 또는 ☎ 120

중랑구 안심지킴이집 현황

- ▶ 미니스톱 4개소: 망우금란점, 우림오거리점, 상봉점, 신내점
- ▶ GS25 12개소: 면목한신점, 사가정스타점, 먹골보람점, 중랑팰리스점, 봉화산역점, 면목사랑점, 중랑동부점, 망우제일점, 망우한마음점, 면목서일점, 중랑신내점, 면목용마점
- ▶ CU 3개소: 면목행복점, 면목중앙점, 상봉듀오토리스점
- ▶ 세븐일레븐 7개소: 망우2호점, 망우점, 면목로데오점, 면목사가정로점, 면목한신점, 상봉2점, 면목2호점

5. 아동 · 청소년 복지서비스

무상보육 지원	100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103
아동 급식 지원	104
꿈나무카드 발급	105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서비스)	106
아동 · 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107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108
중랑형 등 · 하원 도우미 지원 제도	110
가정위탁 아동 보호	111
드림스타트 서비스	112
서울 희망 장학금 지원(서울장학재단)	113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114
청소년증 발급	115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116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요약	117



무상보육 지원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만 0~5세 영유아(전계층 소득·재산 수준 무관)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 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도 가능
 -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 만 3~5세 유아
 -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

서비스 내용

➤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연 령	보 육 료	유아학비
만 0세 (2016년 이후 출생)	430,000원	·
만 1세(2015년 출생)	378,000원	·
만 2세(2014년 출생)	313,000원	·
만 3~5세 (2013~2011년 출생)	220,000원	220,000원
장애아 (2004년 이후 출생)	438,000원	·
지원 방법	아이행복카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BC, 롯데)	

연 령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개월~만 5세	100,000원
장애아 (0~35개월)	200,000원
장애아 (36개월~만 5세)	100,000원
지원 방법	현금 (매월 25일경 지급)

- 기존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웁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계속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 문 의: 중앙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50

유의 사항

- ▶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 가능
-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영아종일제는 중복 지원 안 됨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며 소급 지원 안 됨
-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지원 안 됨
- ▶ 서비스 변경 간 적용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 처리 기준 확인 필요
 -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기준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다음 달부터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 월 자격 책정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 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 기준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 변경 처리 다음 달 1일 반영(월 기준)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다음 달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해당 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다음 달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 서비스 간 자격 변경

〈보육료 수급 자격 변경 확정 시 처리 기준〉

구분	맞춤형 → 종일형	종일형 → 맞춤형
보육료 수급 자격	• (맞춤형) 자격신청일 전일 자격 중지 • (종일형) 자격신청일 당일 자격 생성	• (종일형) 자격책정월 말일 자격 중지 • (맞춤형) 자격책정월 다음 달 1일 자격 생성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민·관·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카드 종류

- › **신용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 **체크카드**: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 **신분 확인용 카드**: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해 주는 카드

서비스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로 물품 구매 및 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 등 우대 혜택 제공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카드 신청
(2014. 8. 1. 이후 온라인 신청 불가)
 - ※ 우리은행 다둥이행복카드 전용고객센터 ☎ 1588-9955
 - 신분 확인용 카드: 동 주민센터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7

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 연령

- › 18세 미만의 학생과 미취학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자격

- ›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급식 지원 내용

- › 미취학 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 취학 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지원: 교육청(학교 급식)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지자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 방학 중 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법

- › 단체 급식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지원

근거 법령 및 문의

-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꿈나무카드 발급

아동 급식 지원 방법 중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욕구에 맞는 일반 음식점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이용 방법

- › ‘꿈나무카드’ 표지가 부착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하면 식사비는 즉시 식당에 지급

구 분	사용 가능 금액	사용 범위
1일 1식	1일 5,000원 사용	한 달 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10,000원까지 사용 가능
1일 2식	1일 2회 10,000원까지 사용 가능	1일 한도가 10,000원이므로 다음 날 이월 안 됨

구 분	토·일·공휴일	평 일
토·일·공휴일 지원 대상자	결제 O	결제 X
평일만 지원 대상자	결제 X	결제 O

꿈나무카드 가맹점

- › 구청 홈페이지(jungnang.seoul.kr)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구정소식에서 확인 가능

주의 사항

- › 대상자 본인인 청소년·아동만 사용(어른 및 타인 사용 발견 시 급식대상에서 제외)
- › 이사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 반납
- › 분실·훼손·도난 시 동 주민센터로 신고
-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 됨

근거 법령 및 문의

-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급식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 대상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근거 법령 및 문의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2

소 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망 우 3 동	온 세 계 지 역 아 동 센 터	02-2209-5579
	참 줄 은 지 역 아 동 센 터	02-493-3393
망 우 본 동	망 우 지 역 아 동 센 터	070-8732-1025
	솔 로 몬 지 역 아 동 센 터	02-439-8679
	열 린 지 역 아 동 센 터	02-435-2153
	중 랑 재 미 지 역 아 동 센 터	070-7787-5154
면 목 2 동	동 그 라 미 지 역 아 동 센 터	02-492-8728
면 목 3 · 8 동	성 심 지 역 아 동 센 터	02-494-5072
	참 사 랑 지 역 아 동 센 터	02-493-0009
면 목 4 동	동 원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3324
	면 목 지 역 아 동 센 터	02-2209-6010
면 목 5 동	녹 색 지 역 아 동 센 터	070-8688-4343
	만 나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9191
	즐 거 운 지 역 아 동 센 터	02-495-9839
면 목 본 동	씨 앓 지 역 아 동 센 터	070-7434-3006
	차 오 름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2077
	파 란 나 라 지 역 아 동 센 터	02-494-0476
	서 울 지 역 아 동 센 터	02-432-9004
상 봉 1 동	참 이 랑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3131
상 봉 2 동	한 길 지 역 아 동 센 터	02-435-6022
신 내 1 동	파 랑 새 지 역 아 동 센 터	02-432-5622
신 내 2 동	마 루 아 라 지 역 아 동 센 터	02-6671-7533
중 화 1 동	중 화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3025
중 화 2 동	생 명 강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0118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함

지원 대상

-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 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기타 교사 추천서에 의한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서비스 내용

- ▶ 아동의 증상에 따라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인지, 미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혼합하여 월 4회 제공

서비스 이용 금액

(단위: 원)

구 분	1 등 급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2 등 급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3 등 급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본인 부담금	16,000	32,000	48,000
정부 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제공 기관(중랑구 소재 15개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자광아동가정상담원	02-492-3623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수련관	02-6919-3314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소나무상담복지센터	02-493-0711
성모마음정신과의원	02-972-5011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02-971-8085	123언어심리연구소	070-8234-7123
샘물아동발달연구소	02-976-7778	헤인언어발달연구원	02-432-8962
우리언어치료실	02-432-7595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02-977-6136
하일렌 발달심리센터	02-432-5550	마미정감각통합상담연구소	02-6925-4698
		심심리상담연구소	02-2094-8455

문 의

-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에 직접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 대상 및 시간

구 분	시 간 제	영아종일제
이용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만 3 ~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 지원 시간	연 480시간 이내	월 120 ~ 200시간 이하

지원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등

〈시간제 돌봄〉

유형	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6,500원)				종합형 (시간당 8,45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이하 (2,680,000원)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4,875원	3,575원	4,225원	4,225원
나형	85%이하 (3,797,000원)	2,925원 (45%)	3,575원 (55%)	-	6,500원	2,925원	5,525원	-	8,450원
다형	120%이하 (5,361,000원)	1,625원 (25%)	4,875원 (75%)	-	6,500원	1,625원	6,825원	-	8,450원
라형	120%초과	-	6,500원	-	6,500원	-	8,450원	-	8,450원

* (A)형 2010.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9. 12. 31. 이전 출생 아동



〈종일제 돌봄〉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 원,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143만 원, 200시간)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2,680,000원)	91만 원 (70%)	39만 원 (30%)	91만 원	52만 원
나형	85% 이하 (3,797,000원)	65만 원 (50%)	65만 원 (50%)	65만 원	78만 원
다형	120% 이하 (5,361,000원)	39만 원 (30%)	91만 원 (70%)	39만 원	104만 원
라형	120% 초과	—	130만 원 (100%)	—	143만 원

* 괄호 속 비율은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본인 부담 비율임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 행복카드 필요)
-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5

중랑형 등·하원 도우미 지원 제도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와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중랑형 등·하원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이용 대상: 영유아 자녀가 있는 중랑구 거주 보육가정

서비스 내용

- ▶ 운영 시간: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 전후
- ▶ 이용 금액: 100% 이용자 부담
※ 시급 7000원부터, 업무 정도에 따라 상이
- ▶ 운영 방법: ① 등·하원도우미 이용 신청 ⇒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등·하원 도우미 소개
③ 상호계약(이용자 ⇄ 등·하원 도우미)

문 의

- ▶ 문 의: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95-0030~1)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2094-1775)



가정위탁 아동 보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 선정) 등
 - ※ 요보호아동 발생 시 만 2세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서비스 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효정신함양비	50,000원/세대·연 2회 (설, 추석)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금	3,000,000원/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자립정착금	5,000,000원/인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
직업훈련비	600,000원/인·분기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600,000원/인·분기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자
양육보조금	150,000원/인·월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받는 아동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 의:** 종량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4

드림스타트 서비스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함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 수급 가정 및 법정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0세(임산부)~만 12세의 아동 및 가족

제공 절차

▶ 접수 및 초기 상담 → 욕구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분 야 별	서 비 스 내 용
신체/건강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 발달 증진 -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인지/언어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부모 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정서/행동 서비스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 안정, 삶의 질 개선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	- 전문사례관리자 1:1 가정방문 지원 - 부모의 자긍심 강화 및 양육기술 지원

근거 법령 및 문의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 시행령 제37조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5~6



서울 희망 장학금 지원(서울장학재단)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선발 대상

- ›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중위소득 80%)

지원 내용

- › 선발 해당 연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
(단,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선발 절차

- ›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행복e음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세대원의 소득인정액 확인

서울 희망 장학금 지원계획 통보 → 학교장 추천 → 자치구별 생활실태 조사 → 지원 대상자 선정 → 장학생선정위원회 최종 심사 → 장학생 선정 및 학비 지원

문 의

- › 서울장학재단 ☎ 070-8667-3280 / www.hissf.or.kr
-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895

참고사항

-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가능
☎ 1599-2000 / www.kosaf.go.kr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현금 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직접 지원함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상자

- 나이 기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조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 건강 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 소득 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 중복 지원 금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건강 지원은 불가

종류 및 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 지원 종류별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이 상이함

▶ 지원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근거 법령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장소: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중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신청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 문 의: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23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 우대증표로 공적신분증과 교통카드기능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함

대상 및 종류

- ▶ 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학생 여부 관계없음)
- ▶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신청 및 절차

-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 「행복e음」시스템(접수) → 한국조폐공사(제작)

신청주민센터
(방문 수령)

신청인
(등기 수령)

▶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사진 1매
-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사진 1매, 대리인 증명 서류
 - ※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 발급신청확인서(청소년증 교부 전 임시 사용) 필요 시 추가 사진 1매

근거 법령 및 문의

-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신청 대상

- 2015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및 초등학교 신입생
- 2015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16년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의료	교육
2	수급 자격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	○	○	○
3	보유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4		중위소득 한산 기준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	-
5		학교장 추천	-	○	-	-	-
6		난민 인정자	○	○	○	-	-

서비스 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

구 분	대 상	내 용
고교학비	고1~고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입학금(고1학년만 해당)
급식비	고1~고3학년	학기 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1~고3학년	연 60만 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초1~고3학년	인터넷(유해차단 SW) 월 17,600원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	초4~고3학년	수련활동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신청 방법 및 문의

학부모가 아래 ①, ②의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 ① 온라인 신청: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포털(www.bokjiro.go.kr) 신청
- ② 방문 신청: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문 의:** 서울시 교육청 교육비 지원 상담센터 ☎ 1544-9654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2-2094-1623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요약

바우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의 노인 중(소득 150%이하)	- 방문(27~36시간), 주간(9~12일) -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65세 이상(소득 120% 이하)	- 건강 상태 점검 - 운동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활동 지원	1~2급 장애인(6~65세 미만)	- 기본(47~118시간), 추가(10~273시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일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예외: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100% 이하)	- 최단 5일~최장 25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가사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만 2~6세 아동(소득 100% 이하)	- 15,000~25,000원 - 독서도우미 파견(책 읽어 주기, 독후활동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만 18세 이하 문제 행동(ADHD) 위험군 아동(중위소득 140% 이하)	-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월 4회) - 부가서비스: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 훈련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급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 질환자(기초, 차상위)	- 24~27시간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소득 150% 이하)	- 월 14만~22만 원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언어발달 지원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100% 이하)	- 월 16만~22만 원 - 발달진단·심리상담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위소득 140% 이하) - 1순위: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2순위: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월 4회 -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 기증 이해 및 강화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정신장애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년자 (중위소득 140% 이하)	- 월 20만 원/월 4회 - 상담, 위기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6. 주거 복지서비스

주거안정 월세 대출	120
버팀목 전세 대출	122
국민임대주택	123
공공임대주택	124
영구임대주택	125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127
기존 주택 전세 임대	128
신혼부부 전세 임대	129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130
긴급 주거 지원	131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132
장기 안심주택	133
서울형 주택바우처	13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135
희망의 집수리	136
주거 복지 주요 내용	137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138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추진하는 월세보증금 대출 제도

서비스 대상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에 속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액 6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금 리

- 우대형: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한 도

-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

상 환 방 법

- 2년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취 급 은 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연 락 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번없이 129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국번없이 126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

※ 월세 대출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융자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연 2.5~3.1%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

서비스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대 상 주 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오피스텔(85m² 이하) 포함]

대 출 한 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억 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 2천만 원)

상 환 기 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금 리

- ▶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리 1%p 인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확인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취급 은행 및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주택도시기금포털 nhuf.molit.go.kr

※ 은행에 대출금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용자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 대상

-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
 -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 자산 소유 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 있음

구 분	입 주 자 격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① 1순위: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② 2순위: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③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① 1순위: 혼인 기간 3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 시중 시세의 50~80% 수준의 보증금, 임대료로 임대

신청 방법 및 문의

- ▶ LH공사, SH공사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인터넷 청약 또는 LH공사, SH공사 방문 청약)
- ▶ 문의: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여 임대 의무 기간(5년·10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

▶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

입주 자격

구 분		입 주 자 격
일반 공급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순위·순차에 따라 선정
특별공급	다자녀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
	신혼부부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생애 최초	근로자(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당첨자 선정 기준: 추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기관 추천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북한이탈주민 포함

서비스 내용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임대료로 임대

신청 방법

▶ 문의: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자격 유지 시(2년마다 재계약)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 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자 선정

입주 대기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정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 선정

서비스 내용

-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임대 기간: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 임대 절차: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 (LH공사, SH공사)가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신청 방법 및 문의

- ▶ LH·SH공사가 정한 모집 기간에 신청자격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영구임대주택 선정 기준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15. 10. 22.)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 제1항)

구 분		배 점 100점	배점 기준(대상자)
1. 서울시 거주 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 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 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 건물 철거 이주자 •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원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및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경제활동 참여 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 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서비스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보증금 500~2,000만 원대, 월 임대료 10~20만 원대)

▶ 임대 기간: 최초 2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신청 방법 및 문의

▶ LH·SH공사가 정한 모집 기간에 신청 자격자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 의료 수급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경제활동 참여 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 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서비스 내용

임대조건	세부내용
전세금 지원한도액	1가구 당 8,500만 원의 95% 이내 입주 대상자의 지원 신청 금액 ※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 조정 가능)
월 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 가능

※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SH · LH공사에 통보해야 함

신청 방법 및 문의

➤ LH · SH공사가 정한 모집 기간에 신청자격자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신혼부부 전세 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4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예비 신혼부부는 당해 연도에 혼인을 할 예정인 가구를 말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및 문의

➤ LH·SH공사가 정한 모집 기간에 신청자격자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 지정, 읍·면·동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 ※ 교통안전공단 지정·관리
가정위탁 아동	대리양육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이며,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 추천자에 한함

※ 단, 지원 신청 시 6월 이내에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 **지원 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대상으로 수도권외의 경우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가구당 전세금한도액을 11,25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금액 한도는 없음
- ▶ **지원 조건:**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2%)를 부담하되 대상 가정의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장소:** 동 주민센터
- ▶ **문 의:**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4



긴급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지원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SH공사에 추천한 자

서비스 대상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 재계약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임대 조건

구 분	전용면적	임 대 료 수 준
매입임대	60㎡ 이하 (1인 50㎡ 이하)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100만~400만 원 월 임대료 1만~10만 원 수준)
전세임대	85㎡ 이하 (1인 60㎡ 이하)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225만~400만 원 월 임대료 7만~12만 원 수준)

-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 ※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8500만 원의 95%

문 의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또는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자활 기반 및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 **신청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선정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 **임대 조건**

구 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50만 원	임대보증금 250만~350만 원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50만 원 공사지원금 5,950만 원까지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공사지원금 8,075만 원까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운영기관 통한 주거 지원	운영기관이 LH·SH공사와 계약한 동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에서 각 호별 임대 조건 결정	
국민임대	• 20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 조건: 주택규모(26㎡~59㎡)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LH공사 서울지역본부 ☎ 02-1600-1004, SH공사 ☎ 1600-3456



장기 안심주택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최대 6년까지 특별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신청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선정 기준

자 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자 동 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임 * 월평균 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 원 이하 (토지가액: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현재 가치 기준 2,465만 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 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 ※ 산출 방법: 자동차 가액 = 취득가액 × {1 - (0.1 × 경과 연수)}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공급 유형	운 영 방 식	거주 기간
보증금 지원형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5% 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문 의: SH공사 ☎ 1600-3456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기초생활수급 가구 제외, 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 가능)
- 월세 거주 가구(*준주택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무주택 가구
- 민간 전세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인 가구
☞ 주택바우처 신청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동시 신청하여 소득 조사 시행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	1인 50,000원 ~ 6인 이상 75,000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서류: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지급 대상	주택소유자 계좌 입금 또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

※ 2016년 상반기 중 지원 금액 인상 예정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또는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경감시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가구를 제외한 임차가구

서비스 내용

- ▶ **사업 내용:** 단열·창호 교체 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으로 실시
- ▶ **지원 내용**
 -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창호 공사: 집 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 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물품 지원: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 ▶ **가구당 지원 한도:** 가구당 150만 원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기간:**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계획 공고 이후(매년 5월 이후)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30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공공임대 거주 가구 및 자가 가구 제외)

서비스 내용

- ▶ **수리 가능 시설:** 120만 원 이내에서 주거에 필요한 13개 표준공정* 및 기타 사항(경미한 수리)
 - ※ 13개 표준공정: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새시, 처마,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공사, 타일(화장실, 주방), 페인트, 전기
- ▶ **수리 제외 시설:** 보일러 등(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 중인 공정)
- ▶ **추진 내용**
 -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외국인 근로자 가구도 수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시공업체 공모 결과 적격업체로 지정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공사 시행

신청 방법 및 문의

- ▶ **신청 기간:** 서울시 사업계획 확정 후(매년 4월경)
-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43



주거 복지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 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입주 가능)
다가구 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 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국민임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 5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 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가능)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 무료 지원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서비스 내용

- ▶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거래금액이 7,500만 원 이하
 - 월세 임대차 경우 거래금액 산출식: 월세보증금 + (월차임×100)
 - ※ 월차임에 100 곱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월차임 70을 곱한 거래금액으로 계산
- ▶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로 발생한 중개보수 100% 무료 지원
(구청 50%, 협회 50%)

지원 방법 및 근거

- ▶ 지원 방법: 주택 임대차(전·월세) 거래가 완성되고 전입신고 후 대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지원
 - ※ 전입신고 시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자임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별도 요청 없어도 무료 지원
- ▶ 근 거: 업무 협약(2010.1.19.)
- ▶ 문 의: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 02-2094-1472

